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7. 9 선고 2020가단1476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1. 5. 28.

판 결 선 고 2021. 7. 9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38,219,384원 및 그 중 24,679,343원에 대하여 2020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8. 11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,626,9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,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,626,9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각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조미옥

별지